

여비 규칙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체육회 여비규정(이하“규정”이라한다)에 의거 직원이 업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하는 여비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생활 체육업무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회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본회의 모든 직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삭제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제4조(여비기준)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위 지급액에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②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③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단, 관외 지역으로 출장이 발생할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1.)

제5조(지급액) 본회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출장신청서 작성 및 지급)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에 의하여 출장의
무가 발생되었을 때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 총무팀
회계담당자는 “출장신청서”에 의거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